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정 2005. 1. 1. 규정 제57호

개정 2007. 3.15. 제2007-13호

전부개정 2009. 5. 1. 제2009-21호

전부개정 2011. 6.29. 제2011-68호

사규명 변경 및 개정 2012. 2.24. 제2012-15호

개정 2013. 6. 7. 제2013-40호

개정 2015. 4. 1. 제2015-20호

개정 2015. 6.27. 제2015-39호

개정 2016.11.19. 제2016-89호

개정 2019. 9.17. 제2019-34호

개정 2021.12.27. 제2021-62호

개정 2022. 5.27. 제2022-29호

개정 2023.10.06. 제2023-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합니다)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

도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 간의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3.06.07., 2016.11.19>

제2조(적용범위 및 열람) ① 이 약관은 철도공사의 광역철도 여객운송과 「도시철도법」 제34조의 연락운송 및 연계운송, 버스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적용합니다. <개정 2012.02.24, 2015.06.27., 2016.11.19>

② 전세운송 등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객과 철도공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개정 2012.02.24.>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락운송을 하는 기관의 약관 및 「상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④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 광역철도 영업구간 내 각 역에 갖춰 두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개정 2015.04.01.>

제2조의2(약관의 변경) ① 철도공사는 적용법령 개정, 정부명령·지시 또는 철도공사에서 필요한 경우 이 약관 및 이를 근거로 정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 철도공사는 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을 시행 1주일 전에 게시하거나 게재합니다. <개정 2019.09.17.>

[본조신설 2015.06.27.]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2.02.24, 2013.06.07, 2015.04.01, 2015.06.27, 2016.11.19., 2019.09.17., 2021.12.27><신설 2021.12.27>

1. “광역철도”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노선(이하 “광역철도 구간”이라 합니다) 및 이에 속한 설비와 그 노선을 운행하는 광역전철과 ‘ITX-청춘’을 말합니다.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역철도구간과 연락운송 또는 연계운송 하는 노선(이하 “도시철도구간”이라 합니다) 및 이에 속한 설비와 열차 등을 말합니다.
 3. “연락운송”이란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광역철도구간과 도시철도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연계운송”이란 운임체계가 다른 전철기관 간에 해당운임을 배분 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의 운임을 합산하여 적용한 후, 서로 연속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역”이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6. “열차”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광역전철과 ITX-청춘을 말합니다.
- 가. “광역전철”이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를 말한다.

나. “ITX(Intercity Train eXpress)-청춘”(이하 “ITX”라 합니다)이
란 도시 간 거점 수송을 담당하는 광역급행열차를 말합니다.

7. “직원”이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
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 “여행시작”이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역무자동화기기
또는 직원에게 승차권확인을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9. “환승”이란 광역전철, 도시철도 및 버스 간 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10. “승차권”이란 광역철도구간 및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
는 1회용승차권, 교통카드·단체승차권 및 정기승차권을 말하며,
철도공사와 여객 간의 운송계약에 관한 증표를 말합니다.

11. “1회용승차권”(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이란 여객이 광역철도
및 광역철도구간과 연락 또는 연계운송하는 구간을 1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카드형 1회권: 이용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공
용 카드를 말하며, 일반·어린이·우대용으로 구분합니다.

나. 토큰형 1회권: 이용 후 자동개집표기에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
하는 승차권을 말하며, 일반·청소년·어린이·우대용으로 구분합
니다.

12. “교통카드”란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
여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Integrate Circuit card)로

서 광역철도구간에서 사용되는 카드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후급교통카드: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Credit Card)

나. 선급교통카드: 카드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카드에 입력(이하 “충전”이라고 합니다)하여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동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카드사업자와 제휴한 다른 카드(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를 포함합니다)

다. 우대용교통카드: 광역철도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할 때마다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

13. 삭제 <2019.09.17.>

14.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합니다)이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구간을 1매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써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를 이용한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급교통카드 형태의 승차권을 말합니다.

가. 삭제 <2019.09.17.>

나. 삭제 <2019.09.17.>

15. “단체승차권”(이하 “단체권”이라 합니다)이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임을 할인받은 승차권을

말합니다.

16. “버스”란 철도공사 사장과 관할 시·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일정 시간 이내에 광역전철과 서로 환승 이용하는 경우 할인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를 말합니다.

17. “기본운임”이란 별표 1에 정한 광역전철 운임을 말합니다.

18. “수도권 내 구간”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19. “수도권 외 구간”이란 제18호에 정한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경부선 평택역~천안역, 장항선 천안역~신창역, 경춘선 가평역~춘천역 간을 말합니다.

20. “동해선 구간”이란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있는 광역철도 구간으로 부전역~태화강역 간을 말하며, 운행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부산구간”이란 동해선 구간 중 부전역~월내역 간을 말합니다.

나. “울산구간”이란 동해선 구간 중 월내역~태화강역 간을 말한다.

21. “경계역”이란 수도권 내·외 구간의 경계가 되는 평택역과 가평역을 말합니다.

22. 삭제 <2019.09.17.>

23. 삭제 <2019.09.17.>

24. “시계외”란 운임체계가 다른 두 개 이상의 구간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와 도, 광역시와 광역시, 도와 도를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5. “시계외운임”이란 시계외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운임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성립 및 적용) ① 여객과 철도공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때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2023.10.06.>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1회권을 구입하였을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를 역무자동화기기에 확인받았을 때
3. 무임대상자가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았을 때
4.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하였을 때
5. 단체 및 전세여객운임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발급받았을 때
6.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② 삭제 <2016.11.19.>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과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5조(운임의 선급 및 신분증명서 소지)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할 때에는 소정의 운임을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5.04.01., 2015.06.27>

②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충전·정산하거나 초과승차, 무표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운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개정 2015.04.01.>

③ 여객은 광역철도구간을 이용하는 동안(도착역에 도착하여 운임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유효한 승차권과 할인을 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정 2013.06.07., 2019.09.17>

[제목개정 2012.02.24, 본조제목변경 2019.09.17.]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① 철도공사는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09.17.>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역,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5. 휴대품에 관한 사항

② 철도공사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02.24., 2013.06.07., 2023.10.06.>

1. 열차운행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③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 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으며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02.24, 2015.04.01, 2015.06.27., 2019.09.17., 2023.10.06.>

1. 역 또는 열차 내에 별표 3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직원의 허락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나눠주는 행위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2. 역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3. 역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오물 등을 버리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역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5. 직원과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16.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17.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18.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정한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19. 삭제 <2019.09.17.>

20. 삭제 <2019.09.17.>

21. 유아가 만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22. 제34조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3.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방·방역 대책 또는 철도공사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킨 경우 광역전철 승차권의 잔여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신설 2012.02.24.><개정 2019.09.17>

제7조(여객의 구분) ① 여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개정 2012.02.24, 2013.06.07, 2016.11.19., 2019.09.17., 2023.10.06.>

1. 유아: 만 6세 미만의 사람

2. 어린이: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사람

4. 어른: 만 13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5. 노인: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제1항에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② 유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로 봅니다. <개정 2012.02.24., 2019.09.17>

1. 보호자 1명이 동반하는 유아가 3명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2.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③ 외국인이 제1항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개정 2016.11.19.>

제2장 광역전철 여객운임 [제목개정 2012.02.24.]

제8조(운임의 거리계산 및 단수처리) ①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운임계산거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철도영업거리표

(연락운송기관에서 정한 거리를 포함합니다)에 정한 여객영업거리를 따릅니다. <개정 2013.06.07., 2016.11.19>

③ 사고 등으로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구간을 도보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 전 구간의 운임을 계산합니다. <개정 2016.11.19.>

④ 운임을 받거나 반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개정 2015.04.01.>

1. 1회권 및 단체권은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2. 교통카드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3. 정기권은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제9조(운임의 계산) ① 수도권 내 구간 또는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거나, 동해선의 부산구간 또는 울산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5.06.27., 2016.11.19., 2021.12.27.>

1. 기본운임: 10km까지는 별표 1에 정한 기본운임
2. 추가운임: 10km 초과 50km까지는 5km 마다, 50km를 초과하는 구간은 8km 마다(다만, 동해선의 경우 10km 초과 시 10km 마다) 별표 1에 정한 추가운임을 가산

②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매 4km 마다 별표 1에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5.06.27>

③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이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와 버스를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총 이용거리에 대하여 통합운임을 적용하거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④ 동해선의 부산구간과 울산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 운임을 계산한 후 한 구간의 기본운임을 할인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시계외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두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한 거리가 총 10km 이하인 경우에는 한 구간의 기본 운임만 받습니다. <신설 2021.12.27.>

제10조(여객운임) ① 여객운임은 제9조에 따라 산출한 편도운임으로 하고, 여객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운임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5.06.27., 2016.11.19>

② 삭제 <2015.06.27.>

③ 삭제 <2015.06.27.>

④ 단체운임은 20명당 1명을 인솔자로 하여 무임으로 하고, 운행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개정 2012.02.24, 2015.06.27, 2016.11.19., 2019.09.17., 2023.10.06.>

1. 수도권 내·외 구간: 여객 구분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20퍼

센트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명의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보다 낮을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

2. 동해선 구간: 여객 구분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10퍼센트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

⑤ 정기승차권 운임은 별표 2와 같습니다.

⑥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퍼센트 할인)으로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2019.09.17., 2023.10.06.>

1.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사람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함께 타는 보호자 1명

⑦ 선·후급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06:30까지 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본운임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하는 경우 및 동해선 구간은 제외합니다. <신설 2015.06.27><개정 2016.11.19., 2019.09.17>

제3장 광역전철 승차권의 이용 [제목개정 2012.02.24., 2016.11.19]

제11조(1회권의 이용) ① 1회권은 발매일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용은 발매일에 발매한 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② 1회권은 여객이 광역철도 및 광역철도구간과 연락운송 또는 연계운송 하는 구간 내를 1회 승차할 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해선 1회권은 동해선 구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3.06.07, 2016.11.19., 2019.09.17>

③ 카드형 1회권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구간의 운임과 별표 1에 정한 보증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제10조제6항의 무임대상자도 우대용 1회권 이용 시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④ 삭제 <2016.11.19.>

[제목개정 2016.11.19.]

제12조(단체권의 이용) 20명 이상의 여객이 같은 구간과 경로를 동시에 여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운송을 신청한 경우 단체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해선 구간에서는 동해선 단체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제목개정 2016.11.19.]

제13조(정기권의 이용) ① 일정기간 동안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구간

을 이용하는 여객은 정기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해선 구간에서는 동해선 정기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3.06.07, 2015.04.01., 2016.11.19>

② 여객은 별표 1의 비용으로 정기권카드를 구매하여야 하며, 제15조제1항에 정한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정기권에 운임을 반복적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3.06.07, 개정 2016.11.19.>

[제목개정 2016.11.19.]

제4장 광역전철 승차권의 효력 [제목개정 2012.02.24.]

제14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승차권 1매로 1명이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급카드의 경우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③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카드 또는 어린이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어른운임을 받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린이가 어른 또는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2.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3. 무임대상자가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교통카드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4.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짧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제15조(승차권의 유효성) ① 승차권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6.11.19.>

1. 1회권: 운임 변경 전까지
 2. 교통카드
 - 가. 선급카드: 카드 내 남은 금액이 소진될 때 까지
 - 나. 후급카드: 카드 유효기간까지
 3. 우대용 1회권: 발매 당일
 4. 정기권: 사용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편도 60회까지
 5. 단체권: 승차권의 발매일부터 열차 승차일까지
- ② 제1항 각 호의 승차권은 개표 후 5시간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해선의 경우 개표 후 3시간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6.27., 2016.11.19>

③ 승차권의 이용기간을 계산할 때 당일은 영업시작 시간부터 다음 날 02시까지로 합니다. <개정 2016.11.19.>

[제목개정 2016.11.19.]

제16조(승차권효력의 특례) ①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나이,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승차권의 이용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04.01., 2016.11.19>

② 여객이 정기권의 사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남은 사용횟수가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운임을 내지 않고 어느 역에서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2021.12.27.>

③ 여객은 승차권면에 표시(승차권 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새롭게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 2016.11.19.>

제17조(승차권의 확인) ①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는 역 무자동화기기 또는 직원에게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카드형 1회권은 사용종료 후 각 역에 설치된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토큰형 1회권은 여행 종료 시 사용한 1회권을 각 역에 설치된 자동개집표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06.27., 2016.11.19>

제18조(신분증명서의 제시) 할인 또는 우대용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6.11.19., 2019.09.17., 2023.10.06.>

1. 청소년용 1회권 및 청소년용 교통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2.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 가. 노인: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나. 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다. 삭제 <2023.10.06.>
 - 라. 삭제 <2023.10.06.>
 - 마.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 바.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제19조(승차권의 무효)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개정 2015.04.01, 2015.06.27., 2016.11.19>

1.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청소년용·어린이용·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이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18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할인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 역에서 이용을 종료하였을 때
2. 제6조제3항에 따라 여객을 역 밖으로 나가게 하였을 때
3.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였을 때

③ 삭제 <2015.06.27.>

제5장 광역전철 승차변경 및 무표 등 [제목개정 2012.02.24.]

제20조(승차변경) ① 1회권 또는 단체권의 승차구간을 연장한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하차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6.11.19.>

② 도시철도구간에서만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구간을 이용할 경우 해당 구간의 1회권 운임을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6.11.19.>

③ 선급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교통카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④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가 추가로 차감됩니다. <개정 2016.11.19.>

제21조(부가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분실한 사실을 미리 직원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02.24, 2013.06.07, 2015.04.01., 2016.11.19., 2021.12.27.>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하였을 때
3.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4. 승차권의 확인에 응하지 않을 때
5. 단체권에 기록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6.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7.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정한 경우 그 여객의 승차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구간 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 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개정 2016.11.19.>

③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운임과 부가운임을 지급한 여객은 승차일 부터 7일 이내에 승차권과 신분증명서 및 영수증을 함께 역에 제출하고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6.11.19.>

④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이 여행을 마칠 때 역무자동화기기 또는 직원에게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별표 1에 정한 기본운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09.17.>

[제목개정 2013.06.07.]

제22조(개·집표 오류 및 이례사항의 처리) ①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여객이 여행방향을 잘못 판단하여 개표하거나 여행도중 목적지를 지나친 사실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당한 방향으로 다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4.01.>

③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같은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집표기로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후급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 여객이 최초 개표 후 5분 이

내에 동일역에서 동일한 승차권으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승차권의 운임부과 또는 횡수차감을 면제하며, 환승역의 경우에는 동일 노선만 적용합니다. <개정 2013.06.07, 2015.06.27., 2016.11.19., 2021.12.27.>

④ 삭제 <2016.11.19.>

⑤ 승차권 개표 후 5시간(동해선의 경우 3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정기권은 잔여횡수에서 추가 1회 차감합니다. <신설 2013.06.07><개정 2015.04.01., 2016.11.19>

제6장 광역전철 운임의 반환 및 보상 [제목개정 2012.02.24.]

제23조(운임의 반환) ① 여객은 유효한 승차권을 광역전철구간 내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단체권은 발매한 역에서만 가능). 다만, 승차권의 훼손 등으로 관련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9.09.17.>

② 사용하지 않은 1회권은 운임과 보증금(카드형 1회권에 한정함)을 반환합니다. 다만, 판독되지 않는 1회권의 경우 1회권 번호로 조회된 운임을 반환합니다. <개정 2015.06.27, 2016.11.19., 2019.09.17>

③ 정기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의 외관상 훼손 없이 기능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번호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최초 충전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판매금액을 반환합니다. <개정 2016.11.19., 2021.12.27.>

④ 단체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발매금액을 반환합니다. <개정 2016.11.19.>

⑤ 여객이 1회권을 잘못 구입하였거나 승차권의 표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의 훼손이 없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개정 2015.04.01., 2016.11.19.>

⑥ 제6조제3항에 따라 개표 이전에 운송을 거절 당한 경우에는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개표한 이후에도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제24조(승차권의 분실) ① 여객이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승차권을 다시 발급받거나 운임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권은 여행시작 이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② 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부가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권과 교통카드에 한정하여 분실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③ 여객이 분실한 1회권을 찾았거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여객은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또는 이용내역과 분실증명서를 광역철도구간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삭제 <2016.11.19.>

[제목개정 2016.11.19.]

제25조(열차운행 중지 또는 지연 시 처리) ①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중지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반환합니다. <개정 2016.11.19.>

1. 1회권: 여객이 지급한 운임
2. 정기권: 별표 2에 정한 정기권종별 반환운임
3. 단체권: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후급카드: 1회권 기본운임

② 제1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미승차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철도구간의 역에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3.10.06.>

③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이 종료되어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열차가 지연되어 환승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을 경우에는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④ 사고 등으로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해당역 및 홈페이지 등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16.11.19.]

제26조(대체교통비)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광역전철의 지연 또는 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하차역에서 다음과 같이 대체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2023.10.06.>

1. 열차운행 중지 등으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
우: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10,000원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환승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을 경우
가.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10,000원
나.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제25조에서 정한 운임과 10,000원

제7장 ITX 열차 이용 [본장신설 2012.02.24.]

제27조(여객운임 등) 삭제 <2019.07.17.>

[본조신설 2012.02.24.]

제28조(승차권의 유효성 등) 삭제 <2023.10.06.>

[본조신설 2012.02.24.]

제29조(ITX와 광역전철의 상호환승) ① ITX와 광역전철을 타는 곳

(운임구역 내)에서 환승하고자 하는 여객은 타는 곳(운임구역 내)에 설치된 승차권자동발매기 및 교통카드 승·하차처리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19.>

② 제1항의 경우 승차 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의 정당 승차권을 구입(광역전철의 경우 교통카드 승·하차처리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개표 또는 집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6.11.19.>

③ 삭제 <2019.09.17.>

[본조신설 2012.02.24.]

제30조(약관의 준용) ITX를 이용할 때 운임·요금·승차권, 환불·배상·책임·분쟁해결,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사항, 휴대품 및 그 밖의 일반사항 등은 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을 준용합니다. <개정 2013.06.07, 2016.11.19., 2019.09.17>

[본조신설 2012.02.24.]

제8장 휴대금지 및 제한 [중전 제7장에서 이동 2012.02.24.]

제31조(휴대금지 대상) 여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 또는 열차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2.02.24., 2023.10.06.>

1. 별표 3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에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을 용기에 넣고 겹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

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3.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4. 전차선로 등에 접촉하여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2.02.24.]

제32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1조에 정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서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해선의 경우 중량 25kg 초과 또는 각 변의 합이 150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6.27.>

1. 장애인 휠체어
2.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3.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2.02.24.]

제33조(휴대품의 확인 등) ①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직원은 여객과 함께 그 휴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에게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제31조의 휴대금지 대상 또는 제32조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에 하차시키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며, 광역전철의 경우 그 물품은 별표 1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으며, 소지한 승차권 운임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③ 휴대품의 도난, 분실, 파손 또는 휴대품 때문에 다른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여객에게 있습니다.

[중전 제29조에서 이동 2012.02.24.]

제34조(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① 제32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휴대할 수 있으며(서해선은 모든 요일 휴대 불가),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9.09.17., 2023.10.06.>

1.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의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ITX의 경우, 자전거거치대 지정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와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역과 열차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역과 열차 안에서는 개인이동수단, 무인비행장치 및 완구류 등을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의 물품은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6.11.19., 2019.09.17>

③ 제1항과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는 해당 휴대품을 휴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9.09.17.>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2.02.24.][제목변경 2019.09.17]

부칙<규정 제57호, 2005. 1. 1.>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13호, 2007. 3.15.>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1호, 2009. 5. 1.>

이 약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자성승차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2011-68호, 2011. 6.29.>

이 약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15호, 2012.02.24.>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013-40호, 2013.06.07.>

이 약관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20호, 2015.04.01.>

이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9호, 2015.06.27.>

이 약관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89호, 2016.11.19.>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해선의 경우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4호, 2019.09.17.>

이 약관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2호, 2021.12.27.>

이 약관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9호, 2022.05.27.>

이 약관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0호, 2023.10.06.>

이 약관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동해선 부산구간과 울산구간 운임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 제3호나목3), 제4호다목2), 제5호나목 동해선 정기권 운임은 202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06.27., 2016.11.19., 2019.09.17., 2021.12.27., 2023.10.06.>

여객운임표

구 분	내 용	금액			비 고
		수도권	동해선		
			부산구간	울산구간	
1. 기본운임	가. 어른				제9조
	1) 교통카드	1,400원	1,450원	1,450원	
	2) 1회권	1,500원	1,550원	1,550원	
	나. 청소년				
	1) 교통카드	800원	1,050원	1,050원	
	2) 1회권	1,500원	1,150원	1,150원	
2. 추가운임	다. 어린이				
	1) 교통카드	500원	650원	650원	
	2) 1회권	500원	700원	700원	
	가. 어른	100원	200원	200원	
3. 시계외운임	나. 청소년	80원	150원	150원	
	다. 어린이	50원	100원	100원	
	가. 어른		200원	200원	
4. 보증금	나. 청소년		150원	150원	
	다. 어린이		100원	100원	
5. 부가운임 (1건당)	1회권 보증금	500원	0원		제11조
	정기권카드	2,500원	2,000원		제13조
	가. 제31조제1호에 정한 위해물품	100,000원			제33조
나. 가호 이외의 휴대 금지품	10,000원				
다. 휴대품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	5,000원				
7. ITX 임률	ITX 1km 당	100.5원			제30조
	최저운임	3,000원			
8. 최저수수료	ITX 적용	400원			제30조

광역전철 정기권 운임 및 반환 기준 등

1. 정기권 운임(제10조 관련)

가. 서울전용정기권 : 61,600원

나. 거리비례정기권

단계	이용구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 카드운임	단계	이용구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 카드운임
1	1,600원 이내	61,600원	10	2,500원	93,500원
2	1,700원	63,600원	11	2,600원	97,200원
3	1,800원	67,300원	12	2,700원	101,000원
4	1,900원	71,100원	13	2,800원	104,700원
5	2,000원	74,800원	14	2,900원	108,500원
6	2,100원	78,500원	15	3,000원	112,200원
7	2,200원	82,300원	16	3,100원	115,900원
8	2,300원	86,000원	17	3,200원	119,700원
9	2,400원	89,800원	18	3,300원 이상	123,400원

다. 동해선정기권

단계	이용구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 카드운임	단계	이용구간 교통카드운임	정기권 카드운임
1	1,650원 이내	61,700원	6	2,300원	86,000원
2	1,850원	69,200원	7	2,400원	89,800원
3	2,050원	76,700원	8	2,450원	91,600원
4	2,200원	82,300원	9	2,650원	99,100원
5	2,250원	84,200원			

2. 정기권 이용구간의 구분(제10조 관련)

가. 서울전용정기권 이용구간

- 1) 경부선 서울~금천구청역 간
- 2) 경인선 구로~온수역 간
- 3) 경원선 용산~왕십리경유~도봉산역 간

- 4) 분당선 왕십리~북정역 간
- 5) 경의중앙선 청량리~양원역 간 및 용산~가좌역 간
- 6) 경의선 서울~수색역 간
- 7) 경춘선 상봉~신내역 간
- 8) 서해선 김포공항역
- 9) 서울교통공사 모든 구간(1~8호선. 다만,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역 간, 5호선 미사~하남검단산역 간, 7호선 까치울~석남역 간 제외)
- 10) 9호선 모든 구간,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 구간, 우이신설경전철 모든 구간, 김포도시철도 중 김포공항역 및 신림경전철 모든 구간

나. 거리비례정기권 이용구간 : 광역전철 및 수도권 도시철도 전 구간 중 정기권 권종(단계)별 교통카드 운임수준 이내 구간

다. 동해선정기권 이용구간 : 동해선 부전~태화강역 간

3. 정기권 운임적용(제10조·제20조 관련)

가. 해당 구간(운임수준)내 이용 시 잔여 사용횟수 중 1회 차감

- 1) 어느 역에서나 승·하차 가능
- 2) 서울전용정기권은 지정구간 이외의 역에서 승차불가
- 3) 동해선정기권은 동해선 구간 이외의 역에서 승차 및 하차불가

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하차한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잔여 사용횟수 추가 차감

- 1) 서울전용정기권으로는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 시 서울시계 경계 역에서 서울시계 바깥 방향으로 매 20km까지 마다 1회 추가 차감
- 2) 거리비례정기권으로 단계별 이용거리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한 거리는 추가로 잔여 사용횟수 차감

단계	횟수 추가차감기준	단계	횟수 추가차감기준	단계	횟수 추가차감기준
1	20km까지 마다 1회	7	50km까지 마다 1회	13	98km까지 마다 1회
2	25km까지 마다 1회	8	58km까지 마다 1회	14	106km까지 마다 1회
3	30km까지 마다 1회	9	66km까지 마다 1회	15	114km까지 마다 1회
4	35km까지 마다 1회	10	74km까지 마다 1회	16	122km까지 마다 1회
5	40km까지 마다 1회	11	82km까지 마다 1회	17	130km까지 마다 1회
6	45km까지 마다 1회	12	90km까지 마다 1회	18	추가차감 없음

3) 동해선정기권으로 단계별 이용가능 운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추가로 잔여 사용횟수 차감

단계	횟수 추가차감 기준	단계	횟수 추가차감 기준
1	추가운임 400원 마다 1회	6	추가운임 1,200원 마다 1회
2	추가운임 600원 마다 1회	7	추가운임 1,200원 마다 1회
3	추가운임 800원 마다 1회	8	추가운임 1,200원 마다 1회
4	추가운임 1,000원 마다 1회	9	추가운임 1,400원 마다 1회
5	추가운임 1,000원 마다 1회		

4. 정기권운임 반환 기준(제23조 관련)

가. 정기권운임 반환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반환

① 사용일수 기준: 정기권운임 - (사용일수×종별교통카드편도운임×2회)
② 사용횟수 기준: 정기권운임 - (사용횟수×종별교통카드편도운임)

나. 반환운임 계산 예외사항

- 1) 사용일수 기준 반환하는 날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일수에서 제외
- 2) 충전한 날 미사용 반환 시 전액반환
- 3) 기능의 훼손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권운임×남은 횟수/60”을 반환합니다. 다만, 외관상 훼손이 없어야 합니다.

다. 종별교통카드 편도운임 적용기준

- 1)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정기권

권종 (단계)	적용액	권종 (단계)	적용액	권종 (단계)	적용액	권종 (단계)	적용액
서울전용	1,400원	5	2,000원	10	2,500원	15	3,000원
1	1,400원	6	2,100원	11	2,600원	16	3,100원
2	1,700원	7	2,200원	12	2,700원	17	3,200원
3	1,800원	8	2,300원	13	2,800원	18	3,300원
4	1,900원	9	2,400원	14	2,900원		

2) 동해선정기권

단계	적용액	단계	적용액	단계	적용액
1	1,650원	4	2,200원	7	2,400원
2	1,850원	5	2,250원	8	2,450원
3	2,050원	6	2,300원	9	2,650원

라. 사용기간 중 운임조정 특례

- 1) 사용기간 중 운임이 조정된 경우 이용기간 중 정기권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
- 2)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기권운임×남은횟수/60”을 반환

마. 잘못 충전한 정기권은 이 약관에 따라 반환 후 다시 충전하여야 합니다.

5. 개표 후 열차운행불능 또는 지연 등의 경우 반환액 기준(제25조 관련)

가.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정기권

권종 (단계)	반환액	권종 (단계)	반환액	권종 (단계)	반환액	권종 (단계)	반환액
서울전용	1,700원	5	2,100원	10	2,600원	15	3,100원
1	1,700원	6	2,200원	11	2,700원	16	3,200원
2	1,800원	7	2,300원	12	2,800원	17	3,300원
3	1,900원	8	2,400원	13	2,900원	18	3,400원
4	2,000원	9	2,500원	14	3,000원		

나. 동해선정기권

단계	적용액	단계	적용액	단계	적용액
1	1,650원	4	2,200원	7	2,400원
2	1,850원	5	2,250원	8	2,450원
3	2,050원	6	2,300원	9	2,650원

위해물품(제31조제1호 관련)

종 류	품 목 별 내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피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그 밖에 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